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싱가포르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46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482

03. 비관세장벽 현황_ 485

04. 수출 애로사항_ 497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499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e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기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¹⁾²⁾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104억 달러(한화 약 15조 2,880억 원)로 전년 대비 5.1% 성장 했으나, 다수의 품목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73억 달러(한화 약 10조 7,310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시장 중 큰 비중인 70.2%를 차지함
 - * 육류 시장이 규모 39억 달러(한화 약 5조 7,330억 원)로 가장 높은 37.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낙농품(10.6%), 채소류 (10.6%), 과일 및 견과류(9.6%)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31억 달러(한화 약 4조 5.570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29.8%에 달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규모 11억 달러(한화 약 1조 6.170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의 10.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고, 뒤이어 스낵류(8.7%), 편의식품(5.8%), 소스 및 향신료(1.9%) 순임

표 1. 식품 시장규모(201	9~2023)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9.3	9.5	9.4	9.9	10.4	100.0	5.1						
신선식품	6.4	6.6	6.6	6.9	7.3	70.2	5.8						
- 육류	3.1	3.3	3.4	3.6	3.9	37.5	8.3						
- 낙농품	1.1	1.1	1.1	1.1	1.1	10.6	0.0						
- 채소류	1.1	1.1	1.0	1.1	1.1	10.6	0.0						
- 과일 및 견과류	0.9	0.9	0.9	0.9	1.0	9.6	11.1						
- 유지류	0.2	0.2	0.2	0.2	0.2	1.9	0.0						
가공식품	2.9	2.9	2.8	3.0	3.1	29.8	3.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	1.0	1.0	1.0	1.1	10.6	10.0						
- 스낵류	0.8	0.8	0.8	0.9	0.9	8.7	0.0						
- 편의식품	0.6	0.6	0.5	0.6	0.6	5.8	0.0						
- 소스 및 향신료	0.2	0.2	0.2	0.2	0.2	1.9	0.0						
- 펫푸드	0.1	0.1	0.1	0.1	0.1	1.0	0.0						
- 영유아용 식품	0.1	0.1	0.1	0.1	0.1	1.0	0.0						
- 스프레드 및 당류	0.1	0.1	0.1	0.1	0.1	1.0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5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 인구가 전체의 약 24.1%를 차지하는 140만 명에 달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25~34세 인구가 20.7%를 차지함
- 여성 인구 수는 약 2800만 명(약 48.3%), 남성 인구 수는 약 300만 명(약 51.7%)으로, 남성 인구의 비중이 여성 인구보다 높음
- 2023년 가구 수는 18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7,100달러 (한화 약 3,984 만 원)로 집계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전체의 5.9%에 해당하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752.9달러(한화 약 258만 원)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신선식품 소비액이 가공식품보다 월등히 높음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1,211.1달러(한화 약 178만 원)로 식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69.1%를 차지함
 - * 육류의 비중이 36.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낙농품(10.7%), 채소류(10.6%)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541.8달러(한화 약 80만 원)로 식품과 관련된 전체 지출의 30.9%에 해당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10.6%로 가장 크며, 이어 스낵류(8.7%), 편의식품(5.5%) 순임

(단위: 달러, %)

1.2

21.7

4.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587.1	1.600.8	1.611.0	1.669.7	1.752.9	100.0	5.0
신선식품	1.082.4	1.102.3	1.110.6	1.152.4	1.211.1	69.1	5.1
- 육류	530.0	559.9	576.7	602.3	642.1	36.6	6.6
- 낙농품	180.3	178.2	176.9	183.2	188.4	10.7	2.8
- 채소류	181.5	177.6	174.1	179.2	185.0	10.6	3.2
- 과일 및 견과류	153.4	150.4	147.7	152.0	157.3	9.0	3.5
- 유지류	37.2	36.2	35.2	35.7	38.3	2.2	7.3
가공식품	504.7	498.5	500.4	517.3	541.8	30.9	4.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7.6	173.5	169.8	173.0	185.7	10.6	7.3
- 스낵류	132.8	134.1	140.0	146.3	152.7	8.7	4.4
- 편의식품	94.9	92.8	90.9	94.3	96.2	5.5	2.0
- 소스 및 향신료	38.5	37.8	37.2	38.4	39.7	2.3	3.4
- 펫푸드	21.2	21.4	22.1	22.6	23.0	1.3	1.8
- 영우아용 신푸	16.6	17.3	20.0	21 9	22.8	1.3	4 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스프레드 및 당류

23.1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2019~2023)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주요 품목 중 채소류 소비량이 77.8kg으로 가장 크며,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양임

20.4

20.8

* 육류 소비량은 63.6kg, 낙농품 52.8kg, 과일 및 견과류 36.3kg, 유지류 5.1kg 수준으로 소비됨

21.6

- 가공식품 중 주요 품목 대부분의 1인당 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편의식품과 영유아용 식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56.9kg으로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5.4% 증가함
- * 뒤이어 스낵류 소비량이 16.5kg, 편의식품 13.1kg, 펫푸드 7.3kg, 소스 및 향신료가 6.9kg 순으로 집계됨

# 3.	표 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채소류	83.7	82.6	77.1	76.6	77.8	1.6				
1114	- 육류	56.5	61.1	59.3	60.5	63.6	5.1				
신선	- 낙농품	55.9	55.5	52.1	52.0	52.8	1.5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39.4	38.6	35.9	35.8	36.3	1.4				
	- 유지류	5.5	5.4	5.0	4.8	5.1	6.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60.4	59.2	54.9	54.0	56.9	5.4				
	- 스낵류	15.8	16.0	15.9	16.1	16.5	2.5				
가공	- 편의식품	14.3	14.1	13.1	13.1	13.1	0.0				
	- 펫푸드	6.8	6.5	6.7	7.2	7.3	1.4				
식품	- 소스 및 향신료	7.4	7.3	6.8	6.8	6.9	1.5				
	- 스프레드 및 당류	7.2	6.8	6.1	5.9	6.0	1.7				
	- 영유아용 식품	0.7	0.7	0.7	0.7	0.7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식품 수출액은 135억 9,517만 9,000달러(한화 약 19조 9,849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7.2%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미국(21.9%), 말레이시아(7.8%), 중국(7.1%) 등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 對미국 수출액은 29억 7,762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3,771억 원)로 전년 대비 27.7%로 대폭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씩 감소함
 - * 對말레이시아 수출액은 10억 5,794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5,552억 원)로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5개년 연평균 2.7%씩 성장함
 - * 對중국 수출액은 9억 5,953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4,105억 원)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기록함
 - 對한국 수출액은 3억 781만 1,000달러(한화 약 4,525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7.8% 증가 했으나 순위권 밖에 위치함

표 4.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 z	증감	' 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3,706,374	12,807,272	14,362,948	14,654,296	13,595,179	100.0	-7.2	-0.2
1	미국	3,120,322	3,551,791	3,877,951	4,116,487	2,977,628	21.9	-27.7	-1.2
2	말레이시아	949,700	836,640	911,423	1,137,447	1,057,945	7.8	-7.0	2.7
3	중국	800,837	1,026,579	1,327,921	1,055,553	959,538	7.1	-9.1	4.6
4	태국	924,608	865,770	846,544	911,296	919,698	6.8	0.9	-0.1
5	베트남	1,369,590	869,395	1,055,430	825,186	913,587	6.7	10.7	-9.6
6	일본	901,554	845,338	945,546	968,697	882,192	6.5	-8.9	-0.5
7	인도네시아	595,554	638,686	785,415	912,111	876,523	6.4	-3.9	10.1
8	호주	819,410	753,983	836,543	823,275	810,307	6.0	-1.6	-0.3
9	필리핀	543,933	554,641	640,204	708,907	681,604	5.0	-3.9	5.8
10	홍콩	524,061	351,069	516,888	432,866	597,440	4.4	38.0	3.3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4장 신북병

- 주요 수출 품목은 조제식료품(40.3%)이며 이외 포도즙 증류주, 위스키류 등 각종 주류와 초콜릿, 코코아 가루 등이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 * 조제식료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54억 7,669만 2,000달러(한화 약 8조 507억 원) 규모로 집계됨
 - * 포도즙 증류주 수출액은 12억 196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7,669억 원)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8.8%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위스키류(7.4%), 기타 맥아 추출물(4.0%), 발포성 포도주(3.4%) 등이 있음

丑	5. 품목별 등	동식품 수출현	년황(2019~2 <u>)</u>	023)				(단위 :	천 달러, %)
				0004			비중	증감	' 남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3,706,374	12,807,272	14,362,948	14,654,296	13,595,179	100.0	-7.2	-0.2
1	조제 식료품	5,173,579	5,798,884	6,430,706	6,810,035	5,476,692	40.3	-19.6	1.4
2	포도즙 증류주	1,153,501	855,597	1,248,331	949,738	1,201,966	8.8	26.6	1.0
3	위스키류	921,913	696,246	779,825	838,294	1,007,800	7.4	20.2	2.3
4	맥아 추출물 (기타)	1,152,438	683,868	527,617	611,975	543,959	4.0	-11.1	-17.1
5	발포성 포도주	403,369	272,185	421,903	413,753	456,912	3.4	10.4	3.2
6	주정음료 (기타)	89,964	87,744	114,578	124,345	227,345	1.7	82.8	26.1
7	초콜릿 (기타)	155,014	162,058	170,680	196,438	193,629	1.4	-1.4	5.7
8	초콜릿	212,110	189,548	224,291	225,641	188,295	1.4	-16.6	-2.9
9	영유아 조제 식료품	225,001	291,162	240,457	193,820	164,633	1.2	-15.1	-7.5
10	코코아 가루	100,873	111,930	128,705	145,400	157,577	1.2	8.4	11.8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164억 6,604만 8,000달러(한화 약 24조 2,051억 원)로 전년 대비 1.2%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1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이며, 이어 프랑스(11.0%), 중국(9.5%), 인도 네시아(6.7%) 순임
 - * 말레이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9억 5,810만 2,000달러(한화 약 4조 3,484억 원)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8%의 성장세를 보임
 - * 프랑스산 농식품 수입액은 18억 861만 8,000달러(한화 약 2조 6,587억 원)로 전년 대비 7.6% 증기했으며, 5년간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ᄪ	증감	남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2,754,714	13,074,158	15,342,003	16,671,672	16,466,048	100.0	-1.2	6.6
1	말레이시아	1,965,654	1,987,549	2,322,088	2,707,382	2,958,102	18.0	9.3	10.8
2	프랑스	1,480,514	1,268,900	1,724,340	1,681,274	1,808,618	11.0	7.6	5.1
3	중국	1,101,759	1,196,229	1,406,933	1,641,544	1,569,962	9.5	-4.4	9.3
4	인도네시아	869,437	920,961	1,105,699	1,160,735	1,108,170	6.7	-4.5	6.3
5	미국	1,090,540	1,310,107	1,483,829	1,614,586	1,103,443	6.7	-31.7	0.3
6	호주	762,264	990,187	1,221,922	1,175,396	1,050,628	6.4	-10.6	8.4
7	영국	704,809	664,144	718,476	815,879	981,885	6.0	20.3	8.6
8	태국	623,353	682,689	672,985	734,945	809,558	4.9	10.2	6.8
9	브라질	433,666	492,582	507,262	662,659	590,303	3.6	-10.9	8.0
10	뉴질랜드	461,902	483,847	561,654	620,190	535,659	3.3	-13.6	3.8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동·식물성 유지(8.9%)이며 이외 주류, 조제식료품, 기타 소의 지방 등 다양한 품목이 상위권에 위치함
 - * 동·식물성 유지 수입액은 14억 6,199만 3,000달러(한화 약 2억 1,491억 원)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 포도 증류주의 수입액은 9억 3,125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3,689억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함
 - * 이어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는 위스키류(5.3%), 조제식료품(4.5%), 기타 소의 지방(3.7%) 등으로 근소한 비중 차이를 보임

표	표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비중	증감	'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 <u>ਠ</u>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2,754,714	13,074,158	15,342,003	16,671,672	16,466,048	100.0	-1.2	6.6	
1	동·식물성 유지	379,461	588,471	1,046,857	1,378,320	1,461,993	8.9	6.1	40.1	
2	포도 증류주	846,461	702,487	960,153	869,441	931,258	5.7	7.1	2.4	
3	위스키류	634,198	568,266	621,071	737,414	864,751	5.3	17.3	8.1	
4	조제식료품	609,801	648,132	750,724	750,922	734,673	4.5	-2.2	4.8	
5	소의 지방(기타)	262	477,562	604,335	754,536	615,557	3.7	-18.4	596.2	
6	포도주(2L 이하)	273,532	273,597	443,741	439,092	484,840	2.9	10.4	15.4	
7	발포성 포도주	342,792	262,040	403,019	399,655	475,391	2.9	19.0	8.5	
8	쌀(정미)	218,069	278,520	235,037	222,093	288,864	1.8	30.1	7.3	
9	절단한 냉동 닭고기	214,781	226,481	209,452	348,587	273,461	1.7	-21.6	6.2	
10	냉동 돼지고기	192,174	256,824	245,177	231,305	267,215	1.6	15.5	8.6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싱가포르 농식품 수출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억 6,756만 5,000달러(한화 약 2,463억 원)로 전년 대비 0.7%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3.9%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1억 4,053만 6,000달러(한화 약 2,066억 원)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러, %)

					2023	비즈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26,264	154,183	177,509	166,423	167,565	100.0	0.7	7.3
농산물	119,443	143,471	154,286	134,905	140,536	83.9	4.2	4.1
축산물	1,255	5,392	20,943	29,101	24,224	14.5	-16.8	109.6
임산물	5,566	5,320	2,280	2,417	2,805	1.7	16.1	-15.7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기타 동·식물성 유지, 신선 딸기, 기타 조제식료품, 라면, 혼합조미료 등이 있음
 - * 기타 동·식물성 유지의 수출액은 1,822만 7,000달러(한화 약 268억 원)로, 전년 대비 27.3%로 규모가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108.1%로 집계됨
 - * 신선 딸기 수출액은 1,776만 3,000달러(한화 약 261억 원)로, 전년 대비 49.1%로 대폭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6%씩 성장함
 - * 그 외 기타 조제식료품과 혼합조미료는 전년 대비 각각 8.1%, 3.4%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동시기에 라면은 11.9% 증가함

표 9.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미즈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5,216	171,357	198,828	190,329	186,369	100.0	-2.1	6.4
1	동·식물성 유지(기타)	0	2,024	16,861	25,070	18,227	9.8	-27.3	108.1
2	신선 딸기	13,740	14,040	15,047	11,910	17,763	9.5	49.1	6.6
3	조제식료품 (기타)	12,725	20,899	21,326	17,862	16,417	8.8	-8.1	6.6
4	라면	6,844	9,374	9,192	8,563	9,582	5.1	11.9	8.8
5	혼합조미료	6,958	5,472	6,575	6,136	5,926	3.2	-3.4	-3.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싱가포르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 라이선스 취득	•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싱가포르 식품청에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육류, 달걀 수입 시 생산업체는 사전에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수입신고	•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으로 제반서류를 싱가포르 세관에 제출 • 제출서류: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포장명세서 ④ 화물통관 허가서 ⑤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⑥ 검역증명서(필요 시) 등	
관세 납부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시 무관세가 적용되나, 주류의 경우 관세 납부 ・Inter-Bank GIRO를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	싱가포르 수입업체
수입검사	• 싱가포르 식품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입식품 검사 신청 • 수입검사 시행 시 화물통관 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 제출 필요 ▼	
물품 반출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 반출 가능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싱가포르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기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싱가포르 수출 시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FTA 또는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 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싱가포르 수입업체	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가 수출검역을 요구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출검역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식물검역은 일 검역시행장으로 지	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정된 장소에서 지행됨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 있음
운송 수단 선적		2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싱가포르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 라이선스 취득	•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수입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싱가포르 식품청의 라이선스 취득 또는 등록이 필요함 - 수입요건 확인 후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육류, 달걀, 어류,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반드시 라이선스 취득 필요
수입신고	• 싱가포르 수입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 -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함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싱가포르 수입신고 제출서류〉		
수입신고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포장 명세서	④ 화물통관 허가서⑤ 원산지증명서(필요 시)⑥ 검역증명서(필요 시)	
	• 일반적으로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일부	항목에서의 관세 납부 필요	
관세 납부	- 일반적으로 주류 등을 제외한 식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상품 및 서비스세 (GST)를 납부해야 함		
	– Inter–Bank GIRO를 통해 싱가포르 서	l관에 납부함	
	•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이 수입검사 대싱	에 해당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을 통해 수입	
	식품 검사 신청이 가능함		
	- 식품 검사 시 화물통관 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을 제출해야 함		
	-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경우에 따라 수출이 중지될 수 있음		
	- 2015년부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신선란은 최소 검사 1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싱가포르 식품청은 위생증명서 요구 등 품목별 수입 요건을 규정		
수입 검역	- 육류의 경우 식품청이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만 수입하고 있으며 육류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음		
	- 난류의 경우 승인된 시설 및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며 수입일 7일 이내에 발급된 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함		
	– 신선 농산물의 경우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잔류물질허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 가능함		
	 - 식수, 유아용 시리얼 및 조제분유, 가공 과일 및 채소 등의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 수출증명서, 제조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2에 따라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위생증명서, 할 수 있음	
물품 반출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가		

● FTA 체결현황

표 10. 싱가포르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및 서명) AASEAN(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인도, 파나마,		
요르단,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페루, 중국, 코스타리카, EU, 튀르키예, 영국, 메르코수르, GCC, AFTA, RCEP, EFTA, CPTPP, PASFTA, MCSTFTA, EAEU, PA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망고
- 채소류: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묙류 : 딸기묘
 - * 주요 신선 · 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 단, 재배매체(코코피트, 펄라이트 등) 사용 시 아래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재배매체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식물 기생선축이 없음 또는 살선축제를 처리하였음"
 - * 재배매체만 수출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식물기생선충이 없음"을 부기 또는 소독처리
 - * 종자 및 묘묙류의 경우, 싱가포르 식물검역당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전 수입업체에 확인 필요

• 축산물

- 식용란, 멸균 식육가공품(우육, 가금육, 돈육, 알가공품 함유)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gia.go.kr/listWebOia3WGJYYO.do?clear=1

(2) 수출 불가능 품목

• 축산물

- * 2024년 5월 22일 발표되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 지역에 대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중단 조치가 해제 되어, 2024년 8월 2일 이후 한국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 수출이 가능함
- * 한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으로 싱가포르 식품청에 의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 제한 및 해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수출 요건 확인 필요

★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사물검역
 -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Shina Korea (싱가포르)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s. Ching Cging (관리책임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싱가포르 시장 내 한국산 농식품은 다양한 제품군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쏠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면류가 가장 인기가 높으며, 스낵과 즉석식품도 수요가 있음
- 김치는 항상 인기가 많고 호박, 오이, 고추, 콩나물, 깻잎, 백감자, 양파 등 품질이 높고 공급량이 증가한 한국산 채소류도 관심이 높음. 최근 수요가 많은 과일에는 오렌지, 사과, 포도, 배, 멜론이 있음
- 최근 싱가포르에 소개된 한국산 농식품으로는 포도, 팥, 쌀, 구운 마늘, 소고기 등이 있음. 자사도 한국산 포도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오렌지, 배, 멜론, 사과를 판매하고 있음. 채소는 감자, 양파, 깻잎, 신선 및 가공된 마늘, 콩나물, 파, 고추 등을 판매함
-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가 뚜렷한 품목은 아님
- 한국산 농식품이 인기인 주요 요인은 제품의 품질임.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선호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싱가포르 식품 수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그럼에도 수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음. 수입 초기에는 제품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이 반복되면 이를 유지하거나 최신 규제를 따르도록 업데이트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안전한 식품 수입을 보장하기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식품 수입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계란의 수입을 위한 수의학적 조건을 2021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채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관련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힘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해 식용 계란 및 저온살균된 난류의 수의학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은 냉장 가금류의 수입 촉진을 위해 냉장 가금류의 수입 촉진을 위해 냉장 가금류 및 냉장 가금 식품에 관한 제품 포장 및 유통기한 관련한 수출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출국 조건을 규정 하고 있음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자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트랜스지방으로 여겨지는 수소화된 오일(PHOs)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2021년 6월부터 금지함
- 싱가포르 식품청(SFA)는 2020년 초 발표된 식품 판매 규정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덧붙이거나 식품첨가물, 색소 물질, 제품별 허가된 감미제 (sweetening agents)의 목록을 수정한 개정안을 2023년 4월에 발표하여 시행 중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incidental-constituents-in-food
식품첨가물 허용치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standards- frameworks-guidelines/food-safety-regulatory- limits/regulatory-limits-for-food-additives
미생물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 for-incidental-constituents-in-food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조건 개정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유형	● 2024년 8월 28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가금류 제품의 수입 조건을 개정하여 발표함. 수입업체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SFA 승인을 받은 공급원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발급한 현행 수의학 건강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함 ● 주요 수정 사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감염은 수출국에서 신고해야 함 -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 동안 HPAI 바이러스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함. HPAI가 발생한 경우최근 28일 동안 HPAI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품이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충분한 열처리를 거친 경우에만 수출 가능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지 등록 건강 코드에 따라 발병이 증식되어야 함 - 해당 국가가 HPAI 백신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경우 : 가금류 제품은 수출국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를 원료로 사용해야 함. 또한, 사용된 백신이 생백신이 아니어야 하며,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원육은 사후 검사, 검열성 및 전염성 질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에서 얻어야 함 - 싱가포르 식품청장이 수출을 위해 승인한 시설에서 공식 수의학 감독하에 위생적인 조건에서 도축, 가공, 포장, 보관 되어야 함 - 레토르트 가공육 제품(예: 통조림 고기)은 멸균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열처리(멸균 값이 Fo3 이상인 멸균 과정)되고, 밀폐 용기에 담겨 상은 보관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야 함 - 병원균 감소 처리(PRT)는 염장(salted), 양념(marinated), 보존(preserved) 및 다른 형태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고기에만 처리 가능함. 시설은 최대 사용 수준까지 SFA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누술 망시 포상으로 밀롱해야 하며, 4°C 이하에서 포상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최소 10일이어야 함 • 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2024년 8월 2일부터 수입 재개로 수출 전 검역 요건 준수 필요
	이상인 멸균 과정)되고, 밀폐 용기에 담겨 상온 보관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야 함 - 병원균 감소 처리(PRT)는 염장(salted), 양념(marinated), 보존(preserved) 및 다른 형태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고기에만 처리 가능함. 시설은 최대 사용 수준까지 SFA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냉장 가금류에 대한 추가 조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관련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세부 내용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승인을 받은 공급처만 수출이 기능함. 또한, 검역증명서 및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검역 절차는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수출 시 검역 절차에 맞춰 서류 및 제품을 준비해야함
통보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016&menu_dept2=35&menu_dept3=427

•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를 개정하여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축종 기반 승인으로 전환함. 기존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경우 추가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며, 새로운 유형 및 축종에 대해서만 승인 요청이 필요함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세부 내용	1) 절차 변경 : 기존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 축종(가축의 종류)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
	2) 신청 면제 : SFA 승인 가공 시설에서 기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가공 제품을 추가로 수출하는 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3) 위생증명서 요구 사항 : 위생증명서에 기재하기 위한 개별 제품 요건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그러나, 명확성을 위해 수출되는 개별 제품 옆에 상품 형태(예: 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됨)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4) 가금류에 대한 정의 확장 : 가금류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 뿔 닭, 꿩의 8개 종으로 확대 정의함(가금류에 대한 SFA의 승인 기준 및 수의학적 수입 요건 변동 없음)
통보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016&menu_dept2=35&menu_dept3=427

•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FSSB) 도입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 2023년 8월부터 싱가포르는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FSSB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 왔음.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REACH를 통한 공개 협의를 완료함. 이는 2025년 1월 8일 의회에서 통과되어 발효됨.
세부 내용	 주요 내용 1) 기존 식품 관련 법률의 통합 및 개정 ① 통합 및 정비 - 여러 식품 법안에 산재되어 있던 유시한 요구 사항을 단일 FSSB로 통합하여, 관련 업체에서 명확하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수입업체는 다른 법률을 참조할 필요 없이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해 FSSB를 참조하기만 하면 됨 ② 개선 - 현재 식품 기업과 동물 사료 생산업체는 안전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함 (면허 소지자가 식품 관리 계획 및 사료 관리 계획을 유지하도록 요구) ③ 간소화 - 소비자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식품 총량을 15kg으로 설정해 유연성을 확대함 - 기존 품목별 제한(예: 육류 및 해산물 5kg, 계란 30개 등)은 없어지지만, 동물 혈액과 같은 고위험 식품은 여전히 금지됨 2) 식품 안전 시스템 강화 ① [신규] 식품 안전 법안 적용 범위 확대 - 식품의 판매 뿐 아니라 기부와 무료 배포를 포함한 식품의 '공급'까지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유통 경로에서 안전을 보장함 ② [신규] 추적 및 리콜 체계 구축 - 주요 유통업체에 식품의 유통 기록을 보관해 불량 식품의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회해야 함 ③ 채별 강화 - 최대 벌금을 인상하고 식품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규정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확보 -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과 과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a) 상습 위반자 및 법인, (b) 질병, 피해 및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안전하지 않은 음식과 관련된 범죄, (c)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높은 처벌 적용 - [신규] 면허가 취소된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신규 면허를 보유할 수 없음

세부 내용	④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 명확화 - 식품, 건강 및 영양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건부는 규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FSSB는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 기존의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와 C 및 D 등급 음료에 대한 Nutri-Grade (영양 등급) 표시 제도 유지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트랜스 지방이 0.5g/100g 이하인 제품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통보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8일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724&menu_dept2=35&menu_dept3=427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최근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주요 TBT 규정 내용 없음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labelling-packaging-information/labelling-guidelines-for-food-importers-manufacturers
"Nutri-Grade" 라벨 표시 제도에 대한 Q&A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 legislation/sale-of-food-act/response-to-comments- received-from-the-public-consultation-on-labelling- and-advertising-requirements-for-nutri-grade- beverages.pdf?sfvrsn=b4dcc344_2."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식품명	• 원산지 • 추천 사용 방법 •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 영양 강조표시 및 건강 강조표시 • 유통기한 • 라벨링 관련 일반 사항 • 영양정보 • 제품 광고에 금지되는 사항		
		영어로 표기해야 함		
	표기 언어	영어로 표기된 정보와 어긋나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병기 가능함		
	NEG	소비자에게 식품의 실제 특징을 알려주기 위하여 식품의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설명을 라벨에 명시해야 함		
	식품명	브랜드 이름, 상표 이름, 복잡한 이름, 판매 이름, 또는 영어가 아닌 이름은 위의 상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음		
		식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표기해야 함. 즉, 가장 먼저 나열된 성분은 식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원재료명	성분명은 일반적인 이름 또는 설명이 아니라 특징적인 이름 또는 설명을 의미하며, 성분의 진정한 특성을 잠재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함		
		식품에 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필요는 없음		
라벨 표기사항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구성 성분의 적절한 명칭을 나타내야 함		
(가이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contain(포함함)'이라는 설명을 이용하여 제품의 라벨에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아스파탐을 함유하는 제품은 '페닐케톤뇨제: 페닐알라닌을 함유함 (PHENYLKETONURICS: CONTAINS PHENYLALANINE)'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경고를 명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제품의 순중량은 절댓값으로 표시해야 하며, 값 범위를 넘어서는 안됨		
	순중량	액체 식품의 경우에는 밀리리터(mL) 또는 리터(L)를 이용한 부피, 고형 식품의 경우에는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이용한 무게,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에는 무게 또는 부피, 그리고 통조림과 같이 액체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순중량 및 배출된 식품의 중량도 표기해야 함		
		수입 식품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원산지	원산지와 함께 수출국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등과 같은 식품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또한 라벨에 표기해야 함		

	수입업체 및	수입 식품의 경우, 현지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라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유통업체 정보	이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능한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품 리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식품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의 설정 및 개봉되지 않은 식품의 안전 및 안전 보장을 해야 함
	و المارة	유통기한 표시는 부패하기 쉽거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제품, 오염되기 쉬운 제품, 유아용 식품 등 특정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
	유통기한	'Use by', 'Expiry date', 'Best before' 또는 'Sell by'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최소 3mm 이상의 글씨로 영구적으로 표시되거나 양각되어야 함
		식품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특정한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명확한 보관 조건을 명시해야 함
		영양 또는 건강 강조표시를 포함한 제품인 경우에만 필수임
		영양 정보 패널은 소비자에게 100g(액체 식품의 경우에는 100mL) 또는 제품 1회 제공량당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회 제공량'과 '패키지당 제공량'은 영양소가 1회 기준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요구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영양정보	열량(kcal, kJ, 또는 둘 다), 단백질(g), 지방(g), 탄수화물(g), 영양 강조표시 또는 건강 강조표시의 대상이 되는 영양소(g)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1×1—)		소금, 나트륨, 칼륨, 또는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에 대한 영양 강조표시를 포함하며 그 외 다른 영양소에 대한 영양 강조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나트륨 및 칼륨 이외의 에너지 또는 영양소에 대한 언급은 패널에서 생략할 수 있음
	추천	'레시피(Recipe)' 또는 '추천 사용방법(Serving Suggestion)'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사전 포장제품의 조리법, 사용 방법, 그림 설명 등을 라벨에 포함할 수 있음
	사용방법	제품이 특정 식품 성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 설명은 제품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식품에 대한 모든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는 반드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검증 가능해야 함
	영양	영양 강조표시는 '고섬유질', '저지방', '무설탕' 등과 같이 식품에 영양적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강조표시 및 건강 강조표시	건강 강조표시는 식품의 소비와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나타냄 -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는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 전반적인 건강한 식단으로써 음식을 섭취할 때 질병이나 건강 관련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감소함을 설명하는 질병 위험 감소 강조표시 - 다른 식품 구성 성분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는 기타 기능 강조표시
	강조표시 및 건강	나타내는 것임 건강 강조표시는 식품의 소비와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나타냄 -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는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 전반적인 건강한 식단으로써 음식을 섭취할 때 질병이나 건강 관련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감소함을 설명하는 질병 위험 감소 강조표시

		라벨은 모든 식품의 패키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읽기 쉽도록 안전하게 부착해야 함
	JUHI ZI	스티커 라벨이 제품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다른 필수 정보를 가리지 않는다면 허용됨
	라벨링 관련 일반사항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제품 광고에	스티커 라벨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라벨과 다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것은 금지됨
표기사항		식품 기업이 식품 라벨 및 광고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식품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는 식품 라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정된 4개 기관에서 사전 검토가 가능하며 비용은 제공 서비스에 따라 상이함
		일반 가공식품에 제품의 성질, 안정성, 품질, 순도, 중량, 원산지 등을 나타내기 위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라벨과 광고에 허용되지 않음
금지되는 사항	치료 또는 예방 조치를 위한 사용, 한 사람의 의학적 조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상태를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식품 섭취로 건강이나 신체 상태가 개선된다는 내용은 금지됨	

^{*} 자료 : 싱가포르 식품청(SFA)

• 인삼 액상차









표기항목	표기		
명칭	후이지 캐나다 인삼		
원재료명	100% 캐나다 인삼		
내용량	2.5g/포 X 10포/박스		
유통기한	2026년 9월 18일		
사용방법	끓는 물 200mL에 티백을 넣습니다. 3-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유통업체	후이지(말레이시아) Sdn Bhd Setia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81550, Jalan Laman Setia 7/1, Laman Laman, Setia Business Park 10 후이지 CV Manjur Rezeki		
	영양 정보 내용량 : 1티백(2.5g), 총 10티백		
	1티백당	당용량	
	칼로리	0 칼로리.	
	% 일일 영양	양소 기준치	
영양성분 정보	총지방	0g (0%)	
	나트륨	3mg (0%)	
	총탄수화물	0g (0%)	
	설탕	0g	
	단백질	0g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은 2,000 킬 다를 수 있습니다.	로리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 치즈케이크









	inch to it to it.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원재료명	닭가슴살, 간장 마늘과 로즈마리 (말토덱스트린, 전분, 마늘, 소금, 설탕, 로즈마리, 파슬리플레이크, 효모 추출물, 변성 전분, 앙파, 천연 케어링, 후추, 파프리카, INS 500(ii), INS 551, INS 415), 변성 전분, 감미료, 간장 페이스트, 소금, 산도 조절제 (INS 262(i), INS 365, INS 260), 감미료(NS 640), 설탕, INS 621, D-자일로스, INS 325, INS 551				
내용량	794g				
저장방법	냉동보관	냉동보관			
원산지	미국				
제조사	Lawler Foods Ltd. P.O Box 2558 Humble, TX 77396				
유통업체	Mondelez Singapore Sales Pte Ltd, 346 Jalan Boon Lay, 싱가포르 619528 싱가포르 고객센터 - 1800 572 3874				
알레르기 정보	계란, 우유, 대두, 밀 함유 견과류(아몬드, 피칸, 호두), 코코넛, 땅콩을 포함한 제품을 처리하는 장비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영양성분				
		100g 당	1회 제공량 79.4 g	일일 권장 섭취량 비율	
	에너지 kcal	334	265	13%	
	나트륨 mg	251	200	10%	
	타스하무 g 2/1 10 6%				

영양성분 정보

영양 성분				
	100g 당	1회 제공량 79.4 g	일일 권장 섭취량 비율	
에너지 kcal	334	265	13%	
나트륨 mg	251	200	10%	
탄수화물 g	24	19	6%	
당류 g	23	18	18%	
지방 g	24	19	35%	
트랜스 지방 g	1.3	1		
포화 지방 g	14	11	73%	
콜레스테롤 mg	113	90	30%	
단백질 g		65	9%	

^{*} 일일 권장 섭취량 비율은 2,000 칼로리 식단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칼로리 필요량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인증

[필수 인증]

-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
 - 싱가포르로 식품 수출 및 유통 시, 모든 식품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무역업자 라이선스 발급 또는 등록을 마쳐야 함. 해당 등록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름. 가공란, 가공식품 및 식기류 수입 업체는 별도의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등록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육류·생선·신선 과채류 및 계란 등을 수출·수입 및 유통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라이선스 신청 및 취득이 필요함.

인증명	· 싱가포르 식품청 업체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ingapore Food Agency	
인증 취득 주체	·수입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 수출자의 기술서류, 검역 당국의 검역증명서		
비용	• 연간 84~378 싱가포르 달러		
소요기간	·1일~5일		
유효기간	•1년		
절차	・업체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싱가포르 CPF Medisave 등록 → GIRO 계좌 개설 → 웹사이트 통해 라이선스 발급·등록 신청		

[선택 인증]

• MUIS 할랄 인증

- 싱가포르는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함. 할랄 품질경영 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종류의 할랄 인증이 가능함.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 Warees Halal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함

인증명	・MUIS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국내 인증대행기관 / Warees Halal		
강제유무	• 권장		
제출 서류	• 업체별로 상이		
소요기간	· 2~4개월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 수수료 지급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승인 및 인증서 발급 → 정기 감사/사후관리		
유효기간	・1년~2년(만료일 2개월 전 인증갱신)		
교차인증	· 한국 KMF인증, 인도네시아 MUI인증, 말레이시아 JAKIM인증		

04 수출 애로사항

♪ 한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해당국가	싱가포르
관련품목	가금류
유형*	TBT
주요 내용	 싱가포르 식품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 지역에 대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24년 5월 22일 경남 창령에서 발생한 HPAI로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었었으며, 해당 금지 조치는 8월 2일부로 해제됨 싱가포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수출의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싱가포르 SFA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싱가포르 식품청(SFA) 승인을 받은 공급처만 수출이 가능함 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시 검역증명서 및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애로·건의 사항	· 싱가포르의 잦은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 수입 금지 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타	※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 관련 원문 https://www.sfa.gov.sg/news-publications/circulars-and-notices/ circulars/2024/trade-circular-on-resolution-of-hpai-outbreak-in-the-republic- of-korea

❷ 싱가포르 중금속 기준

해당국가	싱가포르				
관련품목	식품 전반	식품 전반			
유형*	SPS				
	생가포르 식품청은 중금속 기준을 상품별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비교적 최근(2019년) 중금속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으므로, 식품 수출 기업은 싱가포르의 중금속 기준을 확인해야 함 중금속 기준(일부발췌)				
주요	오염물질	식품	최대 허용치 (ppm)	관련 규정	
내용		해조류 도정쌀	0.2	Dogulation 21	
		현미	0.2	Regulation 31	
	무기비소	생선	2		
		갑각류	2	Maximum Limits for Marine Biotoxins, Inorganic Arsenic, and	
		연체류	1	Methanol in Food	
애로·건의	• 싱가포르의 중금속 관련 정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움. 특히 식품의 분류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해당하는 기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항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건강 보조제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녹차 분말 제품(고형차/다류) 수출 가능여부, 식품 통관 절차 및 통관 구비 서류 등
- HS 코드 분류 검토(FTA 협정관세)
- 녹차 분말 제품 수입통과, 판매시 위생 검역 기준 관련 법률
-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에서 자체 계정으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임. 싱가포르 관할 당국에 별도로 사업자/식품 생산 공장 등록 등을 해야하는지 문의
- 싱가포르 현지의 책임 수입업체 및 지사 설립 없이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창고로 직접 배송이 가능하지 문의
- 싱가포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 발생 여부

♪ 제품 조사 결과

- 싱가포르 식료품 수입 관련 법규
 - 싱가포르는 식품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90%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 국가임
 -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규정을 기초로 자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된 식품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판매법(Sales of Food Act)와 식품규정(Food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고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에서 모든 어류, 육류, 과일, 채소 및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며 식품 안전 및 수입 식품 관리 총괄
- 싱가포르의 식료품 안전, 요구사항은 국제 HACCP 식품규격 위원회의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준비단계를 거칠 것을 요구

단 계	세부사항
1	식품 분류를 사전에 확인
2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센스 취득 또는 등록
3	관련 식품법안 준수여부 확인
4	식품 라벨링 요건 충족
5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조건 확인
6	수입허가 취득
7	식품검사 신청

• 식품 품목별 분류기준

단계	세부사항
육류	- 동물 또는 조류의 전체 또는 부분 - 냉장, 냉동, 가공 및 통조림 형태를 포함 - 육류 함량 5% 이상이며 동물성 유지류 함유
신선 농산물	- 가공되지 않은 과일류 및 채소류 - 절단, 박피, 통조림 처리, 냉동은 제외
신선 난류	- 식용 계란
가공 난류	- 염지하거나 보존 처리한 계란 - 액상 및 분말형태의 계란·완전히 익히거나 오믈렛 형태의 조리된 계란
가공식품	- 육류/신선농산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품

• 통관관세

제품 구분	HS CODE	CA 제품 코드	관세율
녹차 잎 (발효하지 않은 것, 내용량 3kg 이하)	09021010	ZBP0NAC0000	0%
녹차 분말 (잎 제외, 발효하지 않은 것, 내용량 3kg 이하)	09021090	ZBP0NAA0000	0%

• 일반 수입 통과 절차 요약

- 수입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상품이 싱가포르에 도착 후 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함
-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함

• 통관 절차 단계

- ① 물품 도착, 무역업 계정 및 라이센스 확인
- ② 수입 신고, 수입 신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③ 수입부가세(7%), 수입 수수료 납부
- ④ 물품검사 및 반출, 검사대상 물품 검사 및 물품 반출

• Tea(Reg 153)(1) 관련 규정

- "차"는 일반적인 무역 과정을 통해 준비된 차나무 품종의 잎과 잎눈을 의미함
- 차는 7%(w/w) 이하 또는 4%(w/w) 미만의 회분을 생성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절반은 물에 용해 되어야 함
- 수용성 추출물이 최소 30%(w/w) 이상 생성되어야 함
- 가짜이거나, 지치고,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나뭇잎이나 줄기, 또는 표면 처리, 착색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됨
- 미세 차 가루, 차 체 찌꺼기, 중간 입자의 차 부스러기(Tea dust, tea siftings and tea fannings, Reg 154)관련 규정
- 미세 차 가루, 차 체 찌꺼기, 중간 입자의 차 부스러기는 각각 차에 대해 규정된 표준을 준수하는 것 이어야 함
- 염산에 불용성인 재가 5%(w/w) 이하인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판매 관련

- 싱가포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은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큐텐(Qoo10), 아마존(Amazon) 등이 있으며 현지의 지사 설립이나 수입업체 없이 국내에서 플랫폼을 통해 직접 배송이 가능함
- 싱가포르의 별도 사업자 및 생산 공장등을 등록할 필요는 없음
- 싱가포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 발생은 각 플랫폼에서 자동 적용해 구매자와 판매자 에게 청구됨

♪ 자문 결론

- 녹차 분말 제품 수출 가능 여부
- 녹차 분말 제품은 HS CODE에 따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관리하에 있는 식품 및 식품성 보조식품 으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세는 0%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위생검역 관련

- 현재 녹차 분말제품의 경우 싱가포르 수입통관이나 위생검역 기준 법률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며 라벨링과 영양등급 마크에 대하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 판매 관련

- 현지의 지사 설립이나 수입업체 없이 국내에서 플랫폼을 통해 직접 배송이 가능하며, 별도 사업자 및 생산 공장등을 등록할 필요는 없음. 또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 발생은 각 플랫폼 에서 자동 적용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청구됨

(2) 건강기능식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싱가포르 F&B 가맹점으로 소스를 수출하고자 할 때 함량 확인이 필요한 성분 확인

♪ 제품 조사 결과

• 통관관세

제품 구분	HS CODE	CA 제품 코드	관세율
수프, 브로스 등 제조품 (육류 미함유,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21041099	ZDP0XE00000	0%

•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 ① 제품명
- ② 성분/알레르기정보
- ③ 중량
- ④ 제조사 및 수입/유통업체정보
- ⑤ 유통기한
- ⑥ 보관방법(유통기한이 보관방법에 따라야할 경우)
- ⑦ 워사지
- ⑧ 영양정보

• 사용언어

-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해당 세부 사항, 설명, 정보 및 단어를 영어로 해야 함
- 식품의 성분표시는 소문자 기준으로 높이 1.5mm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함
- 정보는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글이나 그림으로 가려지거나 가려져서는 안 됨
- 세부 사항, 설명, 정보 및 단어는 라벨에 눈에 띄어야 하며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기본 표기사항

- 식품 성분과 첨가품의 목록에 사용된 무게 또는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함
- 국제번호시스템(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번호나 식품 첨가물 코드번호(E-number)는 라벨링 표기에 사용될 수 있음
- 1개 이상의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성분의 경우 내림차순으로 명시
- 물(Water)은 표기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착색제, 타르트라진(황색 식용색소의 한 종류) 또는 식용색소 (Colour)는 의무 표기 대상임
- 제품 명칭은 워재료의 일반적 명칭 또는 식품의 진정한 특성을 나타나기에 충분한 설명으로 표기(적절한 명칭이 없은 경우)
- 2개 이상일 경우 각 성분의 적절한 지정 및 성분의 양 또는 비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성분은 첨가하는 중량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지정해야 함
- 합성 착색제의 경우. "tartrazine"은 "tartrazine"또는 "colour (102)"또는 "colour (FD&C Yellow #5)"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 성분명세서에 기재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 과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
- ① 글루텐을 포함하는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또는 교배된 변종 및 그 제품)
- ②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 ③ 계란 및 계란 제품
- ④ 생선 및 생선 제품
- ⑤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 ⑥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 ⑦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 ⑧ 농도 10mg/kg 이상의 아황산염

• 유통기한

- 유통기한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 ① USE BY (dd/mm/yy)
- ② EXPIRY DATE (dd/mm/yy)
- ③ SELL BY (dd/mm/yy)
- 4 BEST BEFORE (dd/mm/yy)
- 날짜 표시는 포장에 영구적으로 표시하거나 양각으로 새겨야 하며 높이가 3mm 이상인 문자로 인쇄 해야 함. 표시는 제거, 변경, 가리거나 겹치거나 변조할 수 없음
- 유통 기한까지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특정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 식품 제조업체는 라벨에 해당 식품의 보관 방향을 명시해야 함.

• 함량 확인 필요한 성분

- 통관시 아래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추가 증빙자료 요구 가능성이 있음으로 세부 성분표를 준비 필요
- ① 비타민 B1 라우릴황산역(VITAMIN B1(THIAMINE) DILAURYLSULFATE)
- ② 향미유(Flavoring Oil)
- ③ 소고기 맛 갂미료(Beef Top Flavor)

♪ 자문 결과

- 통관 및 수출 가능성
- 표기된 HS CODE 21041099의 수입관세율은 0%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 따른 8가지 필수 표기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대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함
 - 모든 라벨링은 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글자 크기(높이 1.5mm 이상) 등 형식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된장소스 성분 함량 공개 필요 항목
 - 제시된 원료 성분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식품 규정상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수출 가능함
 - 아래의 세 성분은 통관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 요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OEM 생산업체에 해당 항목의 상세 성분과 함량 정보를 요청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① 비타민 B1 라우릴황산역(VITAMIN B1(THIAMINE) DILAURYLSULFATE)
 - ② 향미유(Flavoring Oil)
 - ③ 소고기 맛 감미료(Beef Top Flavor)